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5999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이 ○ ○

전남 나주시

2. 김 ○ ○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상갑

피고, 항소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 2-16-5

(日本國 東京都 港区 港南 2-16-5)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미야나가 슌이치(宮永俊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13249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30,000,000원, 원고 김○○에게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폐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여자정신대원 인수축 조치요강"을 "여자정신대 수입축 조치요강"으로, 제10쪽 제11행의 "1965. 12. 17."을 "1965. 12. 18."로, 제11쪽 제6행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일본에 의하여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된 피해자"로, 제13쪽

제15행 및 제19쪽 제12행의 각 "원고 등"을 "원고 김영옥 등"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20~21행의 "②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② 일본 내의 불적 증거는 거의 멀실된 반면,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부터 제13쪽 제1행까지의 "③ 사안의 내용이 -(중략)-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뒤에 "④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데, 소송수행상의 편의, 원고들의 의사, 피고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4행부터 제23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 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9행부터 제29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OO 등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망 최정례가 사망한 1944. 12. 7.경, 원고 김OO 이 귀국한 1945. 9.경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15. 5. 22.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31, 35, 38, 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 김○○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 될 때까지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망 최정례의 상속인들이나 원고 김○○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이후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② 그런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

③ 그러나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표명한 내용은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개개인의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일본 군수사업체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 이후에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9. 8. 14.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였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하여 2011. 12. 13.경 '청구권협정의 대상범위에 는 강제동원 관련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공탁금) 및 피징용자 피해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 대한 일본 측과의 협상은 현재로서 실익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바,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미수금 자료의 입수를 통한 국내 보상, 일본 기업과의 화해 추구 등에 있어서의 측면 지원 관련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민간공

동위원회의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된 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승인될 수 없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 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소멸시효, 제척기간 도과와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을 승인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7나42881)과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되고 새로 설립된 신 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해산된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을 각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

1)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의 원심판결

2) 대법원 2009다68620 판결의 원심판결

송하였다. 그러나 위 각 대법원 판결은 환송판결로써 그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고, 위 각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국내 법학자들도 위 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다.

⑤ 이후 환송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³⁾,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위 각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8. 10. 30.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⁴⁾을 선고함으로써,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었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3)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4) 대법원 2009다68620 판결의 재상고심

⑥ 원고 김영옥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20년경부터 1930년경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써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도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고, 그 지위,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 5. 24. 선고된 위 각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맞으나, 피고 등 해당 일본 기업은 위 각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등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에 따라 위 각 대법원 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이 변동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⁵⁾ 그렇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 10. 3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5. 5. 22.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다른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일본 또는 대한민국 법원

5) 삼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삼고법원이 과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072 판결 등 참조).

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이 폐소시 기관력이 생기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에서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자체는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 경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보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

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단시일 내에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의 논란이 있었던 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고, 이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2. 5. 24.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의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경우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시효정지에 준하는 기간보다 연장하여 3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및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5.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기 46 곤



판사

박상준

박 상 준



판사

최파라

최 파 라

